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90
----------	-------

발의연월일 : 2025. 12. 22.

발 의 자 : 홍기원 · 이언주 · 김태년
서미화 · 윤종균 · 윤후덕
한민수 · 이병진 · 한정애
최혁진 · 문진석 · 전현희
신영대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외교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관 선지급 건에 대한 본부 사후 심사 결과 대상자가 무자력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공관 직원들이 예산 오집행에 대한 반환책임을 져야 하거나 대상자에게 상환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재외공관에서 선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직원들이 사비를 지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 미반환 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지급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외위난상황으로부터 해당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는 재외국민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으로서 해외위난상황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받은 재외국민
-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전달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전달받은 비용을 지체 없이 대신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① · ② (생략)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외위난상황으로부터 해당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외국민은 외교부장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u><신설></u> <u><신설></u>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 ----- ----- ----- ----- ----- ----- ----- ----- ----- ----- ----- ----- ----- -----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는 재외국민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으로서 해외위난상황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받은 재외국민

<u><신 설></u>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부담 등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전달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전달받은 비용을 지체 없이 대신하여 지급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 ----- ----- ----- -----.
---	---